

재정경제부,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추진

입찰참가제한 업체는 자동축출

재정경제부 는 지난 7월 13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파산·해산·부도 등에 의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하기로 하였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및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탈퇴가 불가능하지만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, 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중도 탈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다.

이 경우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파산·해산·부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
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·해산·부도·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탈퇴 조치토록 하였다.

건설현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탈퇴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다.

개정안은 수주를 위한 전략적인 공동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요건을 구성원수 5인 미만으로 하거나 계약참여 지분율을 5%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.

